

의안번호	2205607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7.
추 계 번호	24F515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 - 공제율(%): (현행, 일반 투자기준) 중소 10, 중견 5, 대 1 → (개정안) 중소 12, 중견 6, 대 3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다른 시설투자와 구분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24조제1항제2호)
- 개정안은 현행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구분되어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산업재해예방시설을 구분하고, 일반 시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의 공제율을 적용

[표 1]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·기업규모별 공제율 비교

(단위: %)

	현행			개정안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	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	산업재해예방시설
중소기업	10	12	25	12
중견기업	5	6	15	6
대기업	1	3	15	3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로 규정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규정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제율이 인상되는 투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－ 참고로, 현행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규정*이 존재하나, 개정안에 따른 신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동 시설이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산업재해예방시설(제11조):

1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,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
2.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
3.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시설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

○ 또한,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기업규모별 시설투자액 등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액과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－ 현재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설비투자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, 사업장별 금액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설비투자는 집계되지 않음

※ 사업장별 금액한도: (보조금) 3,000만원, (융자) 10억원

－ 또한, 보조금 지급은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융자지원도 사업장별 300인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 한정됨에

따라 해당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가 집계되지 않음

[표 2]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및 보조금 지급실적 현황

(단위: 개소, 억원)

	용자		보조금 지급	
	사업장 수	금액	사업장 수	금액
2020	840	1,028	26,635	1,683
2021	2,525	3,191	19,283	3,938
2022	2,691	3,563	18,145	4,367
2023	2,540	3,563	22,750	4,542
2024 ¹⁾	2,626	4,286	15,936	4,008

주: 1) 2024년은 10월까지 누적된 실적

자료: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